

도민이 중심
신뢰받는 의회

2025. 4. 30.(수)

제425회 임시회

제 2 차 본회의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 조례안



충청북도의회

산 업 경 제 위 원 회

충청북도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 |
|----------|-----|
| 의안 번호 | 957 |
|----------|-----|

2025. 4. 30.(수)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 의 자 : 유재목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 2025년 4월 11일
다. 회부일자 : 2025년 4월 14일
라. 상정일자 : 2025년 4월 22일

(제4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유재목 의원)

가. 제안이유

본 조례의 제정으로 충청북도 내 첨단산업 분야 산업계 수요에 맞추어 우수인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도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첨단산업 인재혁신 기본계획 수립 (안 제5조)
- 첨단산업 인재혁신 관련 지원사업 (안 제6조)
- 기업인재개발기관등 지원 (안 제7조)
- 위기업종에 대한 지원 (안 제8조)
- 첨단산업 중소·중견기업 지원(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종섭)

가. 발의배경

- 2024년 1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2025. 1. 17.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지역 신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전문 인재를 안정적으로 양성·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근거가 마련됨
- 충청북도는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거점으로, 급증하는 산업 인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이에 본 조례안은 첨단산업 분야 고속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입법정책적 인재혁신 지원 근거가 필요함

나. 제정안 주요 조문 검토

- 안 제5조는 첨단산업 인재혁신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업 추진 근거와 방향성을 마련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음
- 안 제6조는 첨단산업 인재혁신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업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필요하다 판단됨
- 안 제7조는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이 첨단산업 인재혁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 시행령에 따라 도 차원의 재정지원 법적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안 제8조는 위기업종의 인재확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와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위기업종 지정 전이라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탄력적인 대응을 위한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보임
- 안 제9조는 도내 첨단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인재확보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다. 상위법령 등 검토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첨단산업에 필요한 인재혁신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음
- 또한 동법 제5조제4항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이 첨단산업 인재혁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 또는 보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고 되어있고,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고 명시하고 있음
- 동법 제21조제1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업종의 인재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고 하여 지

원업무를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24조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첨단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인재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고 하여 지원사업을 명시하고 있음

- 이에 상위법령에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바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에 대하여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라. 종합의견

- (필요성)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내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수요에 대응하고, 지역 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재 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제정의 필요성이 있음
- (타당성) 본 조례에서는 상위법령에 따라 첨단산업 인재혁신 관련 지원사업, 기업인재개발기관등 지원, 중소·중견기업 지원 등 다양한 수요에 맞춘 구체적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적 근거와 정책적 실현 가능성도 함께 고려되었음
- (법적합성) 관련 법령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례의 조문 체계와 내용 구성 등에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
- (종합의견) 해당 조례의 제정을 통해 충청북도가 첨단산업을 지

속적으로 선도해 나가기 위한 인재혁신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어 정책적·법률적으로 타당하며,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 보여짐

향후 관계부서에서는 본 조례를 바탕으로 충청북도 첨단산업 인재혁신 기본계획 수립, 지원사업 추진 등을 통해 인재혁신을 더욱 활성화하고 나아가 양질의 첨단산업 인재가 지역에 정주하여 선순환을 이루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 조례안

| | |
|-----------|----------------|
| 의안번호 | 제957호 |
| 의결 연월일 | . . . (제 회) |

충청북도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 조례안

| | |
|-------|--------------|
| 발의자 | 유재목 의원 등 7인 |
| 발의연월일 | 2025년 4월 11일 |

충청북도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 조례안

(유재목 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957 |
|----------|-----|

발의연월일 : 2025년 4월 11일

발 의 자 : 유재목, 김꽃임, 이옥규,
박경숙, 이의영, 이종갑, 임병운

1. 제안이유

-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충청북도 내 첨단산업 분야 산업계 수요에 맞추어 우수인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도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첨단산업 인재혁신 기본계획 (안 제5조)
- 지원사업 (안 제6조)
- 기업인재개발기관등 지원 (안 제7조)
- 위기업종에 대한 지원 (안 제8조)
- 첨단산업 중소·중견기업 지원 (안 제11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 법령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 조례안예고 : 2025. 4.
- 협 의 : 과학인재국 산업육성과
- 비용추계 : 붙임

충청북도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충청북도 내 첨단산업 분야 산업계 수요에 맞추어 우수인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충청북도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첨단산업에 필요한 인재혁신을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첨단산업 인재혁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인재혁신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충청북도 첨단산업 인재혁신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내 첨단산업 인재혁신을 위한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첨단산업 인재혁신을 위한 산·학·연 협력 방안

3.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첨단산업 인재혁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첨단산업 인재혁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내 첨단산업 기업과 교육기관 간 협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2. 인재혁신을 위한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임직원 대상 교육 지원

3. 인재혁신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첨단산업 인재혁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기업인재개발기관등 지원) ① 도지사는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이 첨단산업 인재혁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 또는 보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관리 등에 관하여는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위기업종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위기업종의 인재확보를 위하여 법 제21조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 제20조에 따라 위기업종 지정 신청이 있는 업종에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위기업종 지정 전이라도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첨단산업 지역인재 확보) 도지사는 첨단산업 분야의 지역인재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도내 기업의 투자계획과 연계한 인재양성
2. 도내 교육기관과 기업이 연계한 인재양성
3. 도 외에서의 인력 유입을 위한 육아·교육·의료 등 주거환경 조성
4. 그 밖에 도지사가 첨단산업 지역인재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첨단산업 청년·여성인재의 양성·활용) 도지사는 청년·여성인재의 양성·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첨단산업 분야 인턴제도 운영 등 일경험의 제공
2. 도내 첨단산업 분야 취업정보 제공 및 경력관리에 관한 컨설팅 등 일자리 지원 사업
3. 산업계의 첨단산업 인재혁신 활동 시 도내 청년·여성인재에 대한 우대 촉진
4. 첨단산업 분야 도내 청년·여성인재의 양성·활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도내 청년·여성인재의 양성·활용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첨단산업 중소·중견기업 지원) 도지사는 영 제33조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도내 첨단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인재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내 기업 사내교육 등 자체 인재양성 과정에 대한 지원

2. 전문인재 지원 및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3. 도내 우수 인재의 지속적인 확보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4. 우수 해외인재의 유치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첨단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인재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취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첨단산업에 필요한 인재혁신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지정)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이 첨단산업 인재혁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 또는 보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위기업종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업종의 인재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대학 또는 대학원의 정원 조정 및 장학금 지원
 2. 해외인재의 신속한 유치 및 정주에 필요한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지원사항의 우선 지원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인재양성사업의 우선 추진
 4. 청년·여성·은퇴 인재의 긴급한 활용을 위한 육아·교육·의료·거주·이전 등 정주여건 지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7조에 따른 지원
 6. 그 밖에 신속한 인재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원업무가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소관 법령의 개정 등이 필요한 경우 조속히 관련 법령의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0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기업종 지정 신청이 있는 업종의 인재확보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긴급한 지원이 필

요한 경우에는 위기업종으로 지정되기 전이라도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첨단산업 지역인재 확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첨단산업 분야의 지역인재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업의 투자계획과 연계한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인재양성
 2. 지역 내 교육기관과 기업이 연계한 인재양성
 3. 지역 외 인력의 유입을 위한 육아·교육·의료 등 주거환경 조성
 4. 그 밖에 첨단산업 분야의 지역인재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정부는 제1항의 사업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사업이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첨단산업 청년·여성인재의 양성·활용)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년·여성인재의 양성·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첨단산업 분야 인턴제도 운영 등 일경험의 제공
2. 첨단산업 분야 취업정보 제공 및 경력관리에 관한 컨설팅 등 일자리 지원 사업
3. 산업계의 첨단산업 인재혁신 활동 시 청년·여성인재에 대한 우대 촉진
4. 첨단산업 분야 청년·여성인재의 양성·활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5. 그 밖에 청년·여성인재의 양성·활용 촉진에 관련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4조(첨단산업 중소·중견기업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첨단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인재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업 사내교육 등 자체 인재양성 과정에 대한 지원
2. 전문인재 지원 및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3. 우수 인재의 지속적인 확보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4.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해외인재의 유치 지원
5. 그 밖에 중소기업의 인재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정부는 제1항의 사업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그 사업이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8조(해외인재 정주여건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우수 해외인재가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거주 및 생활 시설에 대한 구축 및 운영비 지원
 2. 해외인재의 직계 미성년 자녀의 보육 및 정규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해외인재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대한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에 관한 사항
 4.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주거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내국인에 준하는 수준의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여건조성
 6. 해외인재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지원 및 각종 민원행정 제도의 개선
 7. 해외인재의 입국에 필요한 항공운임 및 초기정착비
 8. 그 밖에 해외인재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인재의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내 취업과 연계한 교육훈련 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의 지급
 2. 지역 내 거주 및 생활 시설에 대한 구축 및 운영비 지원
 3. 그 밖에 해외인재의 지역 내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업무가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소관 법령의 개정 등이 필요한 경우 조속히 관련 법령의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해외인재 정주여건 지원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적·제도적 개선과제를 이행·점검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제4항제1호

○ 사 유

- 본 조례안은 첨단산업 인재혁신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의하고 있으나,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 이에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4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

○ 작성자

과학인재국 산업육성과장 강미경